

제7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(서면회의)

1. 회의일시 : 2012. 12. 26.(수)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
3. 참석위원 : 이계철 위 원 장
김충식 부위원장
홍성규 상임위원
김대희 상임위원
양문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① 서면회의 사유

- 의결 가 ~ 의결 마 :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4조(서면결의) 제1항제1호에 따른 제2010-1차 전원회의('10.1.14), 제2012-48차 전원회의('12.8.31)에서 의결한 '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·반복적 안건 또는 경미한 안건'에 해당됨
- 보고 가 :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4조의1(서면보고)제1항에 따른 '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'의 안건에 해당됨

② 의결사항

가. 「무선설비규칙」 (고시) 전부개정안에 관한 건 - (2012-71(서)-306)

- 전파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에 위임('13.1.1일 시행)되는 일부 내용을 삭제하기 위한 「무선설비규칙」 (고시) 전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- 개정안 주요내용
 - 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된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삭제
 - 무선설비 일반적 조건,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, 신고하지 않고 개설했을 수 있는 무선국 기술기준은 방통위에서 계속 관리
- 향후 계획
 - '12.12월 : 「무선설비규칙」 고시 관보 게재
 - '13.1월 : 「무선설비규칙」 고시 시행

나. 한국방송공사의 'KBS 뉴스광장' 재심에 관한 건 - (2012-71(서)-307)

- 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및 「방송법」 제100조에 의거, 방송통신위원회가 명한 'KBS 뉴스광장' 프로그램 제재조치 처분('12.10.19)에 대한 한국방송공사의 재심 청구('12.11.16) 건에 대하여, 원안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원심처분대로 '주의'를 명하기로 의결함

【 원심결정의 개요 】

▪ 프로그램명	KBS-1TV 'KBS 뉴스광장' (2012.7.30.월, 06:00-07:50)
▪ 제재 조치	주의(객관성 위반)
▪ 위반내용	○ 2012 런던올림픽 유도 경기에서 석연창은 판정 반복으로 조준호 선수에게 승리한 일본의 에비누마 선수와 인터뷰한 장면을 방송하면서, - '확실히 한국 사람이 봤다면 그 판정이 좋지 않다고 느꼈을 것이다'라는 인터뷰 내용을, - "조준호가 이긴 게 맞다. 판정이 바뀐 건 옳지 않다"라고 오역(誤譯)하여 자막 고지하여 「방송심의에 관한 규정」 제14조(객관성)를 위반함.

다. (주)문화방송의 'MBC 뉴스데스크' 선거방송 재심에 관한 건 - (2012-71(서)-308)

- 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및 「방송법」 제100조에 의거, 방송통신위원회가 명한 'MBC 뉴스데스크' 프로그램 제재조치 처분('12.11.2)에 대한 (주)문화방송의 재심 청구('12.11.29) 건에 대하여, 원안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원심처분대로 '경고'를 명하기로 의결함

【 원심결정의 개요 】

▪프로그램명	MBC-TV 'MBC 뉴스데스크' [2012.10.1.(월), 20:55-21:55]
▪제재 조치	경고(선거방송심의규정상 공정성, 객관성 위반)
▪위반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박사 학위 논문이 서울대 서 모 교수의 논문을 상당부분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하면서,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“안철수 후보가 인용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채 서 교수가 실험 결과를 설명하는 부분을 거의 옮겨 쓰다시피 했습니다” - ‘안 후보가 참여한 연구팀의 논문이 다른 후배의 1992년 논문을 베껴 써서 한국 과학재단의 연구비를 받아 착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’, ‘이런 의혹에 대해 안철수 후보 측은 후보와 논의해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’라고 하는 내용 등 - 제대로 된 반론권 제공이나 외부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 소개 없이 제기된 의혹 위주로만 전달하고, 본 내용과 관련 없는 논문을 표절대상 논문으로 제시하는 등의 내용을 방송하여 「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」 제5조(공정성) 제1항 및 제8조(객관성)제1항을 위반함.

라.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소유 인가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 - 이한오의 금강방송(주) 주식취득 - (2012-71(서)-308)

○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18조와 「방송법」 제15조의2에 의거, 이한오(개인)의 금강방송(주)에 대한 ‘기간통신사업자 주식소유 인가’ 및 ‘종합유선방송사업자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’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인가 및 승인하기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- 주식취득인 : 이한오 (서울시 강남구 대치동)
- 피주식취득법인 : 금강방송(주) (대표자: 이종성, 이한오)

주요사업	사업구역	주주 변동	경영현황('11년)		
			자본금	매출액	영업이익
종합유선방송 (152천명) 초고속인터넷 (19천명)	전북 익산시 군산시	.이한오 11.8%→22.0% .이한숙 7.7%→12.7% .이안삼랑 22.3%→ 7.1% .이한규 21.7% .(주)금강정보통신 12.7% .강하남 5.2% .이지영 5.2% .기타 13.4%	124억원	201억원 (통신 29억원)	9억원

마. 기간통신사업자 법인설립 등 인가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·변경승인에 관한 건 - (주)티브로드홀딩스의 (주)티브로드전주방송 설립, (주)티브로드전주방송의 (주)티브로드강서방송 주식소유(최대주주) 및 (주)티브로드전주방송의 (주)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 실질적 지배 - (2012-71(서)-309)

○ (주)티브로드홀딩스의 (주)티브로드전주방송(가칭) 법인설립 인가와 법인분할 변경허가에 대해 다음의 조건을 부과하여 의결하고,

< 법인설립 인가 및 법인분할 변경허가 조건 >

1. (주)티브로드홀딩스는 (주)티브로드전주방송이 변경허가일 이후 2016년까지 차입(지급보증 및 자산담보 포함)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2. (주)티브로드홀딩스는 변경허가 및 인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(주)티브로드전주방송의 재무 건전성 제고 계획('13~'16년)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3. (주)티브로드홀딩스는 (주)티브로드전주방송 설립을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(보정자료 포함)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- o (주)티브로드전주방송의 (주)티브로드강서방송 주식소유(최대주주) 인가 및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과 (주)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에 대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 인가를 의결함

< 설립예정법인(주식취득인) · 주식피취득인 >

구 분	설립예정법인(주식취득인)	주식피취득인		
	(주)티브로드전주방송 (대표: 이상윤)	(주)티브로드강서방송 (대표: 성기현, 김종요)	(주)큐릭스홀딩스 (대표: 이상윤)	(주)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 (대표: 이상윤)
주요 사업	종합유선방송(예정) 초고속인터넷(예정)	종합유선방송(13.5만명) 초고속인터넷(2.8만명)	사업경영 및 관리자문	종합유선방송(19.1만명) 초고속인터넷(6.8만명)
사업 권역	인천, 경기, 충남, 전북	서울시 강서구	-	서울시 도봉구, 강북구
주요 주주	(주)티브로드홀딩스 (100%)	(주)티브로드홀딩스 100% → 0% (주)티브로드전주방송 0% → 100%	(주)티브로드홀딩스 60% → 0% (주)티브로드전주방송 0% → 60% 태광산업(주) (40%)	(주)큐릭스홀딩스 (90.69%) 자기주식 (8.73%)
경영 현황 ('11년)	·자본금: 70억원 (설립시 자본금)	·매출액: 295억원 (통신 59억원) ·자본금: 30억원 ·영업이익: 98억원	·자본금: 293억원	·매출액: 497억원 (통신 149억원) ·자본금: 107억원 ·영업이익: 124억원

3] 보고사항

가.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

- o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(등록 접수업무 시·도→협회 위탁)에 따라 처리절차도의 변경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한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」 일부개정안을 보고받고 원안대로 접수함
- o 주요 내용
 - ① 공사업의 등록신청, 등록기준 신고, 양도 또는 합병에 관한 신고 등의 접수업무 민간기관 위탁(접수 : 시·도→정보통신공사협회)에 따른 처리절차도 등 단순 서식 변경
 - ② 민원인의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사항 추가 (국민연금 가입 증명 또는 건강보험 확인서 등)

○ 추진 일정

- 2012. 12월 : 입법예고(20일)
- 2013. 1월 : 규제심사 및 위원회 의결
- 2013. 2월 : 관보게시 및 시행